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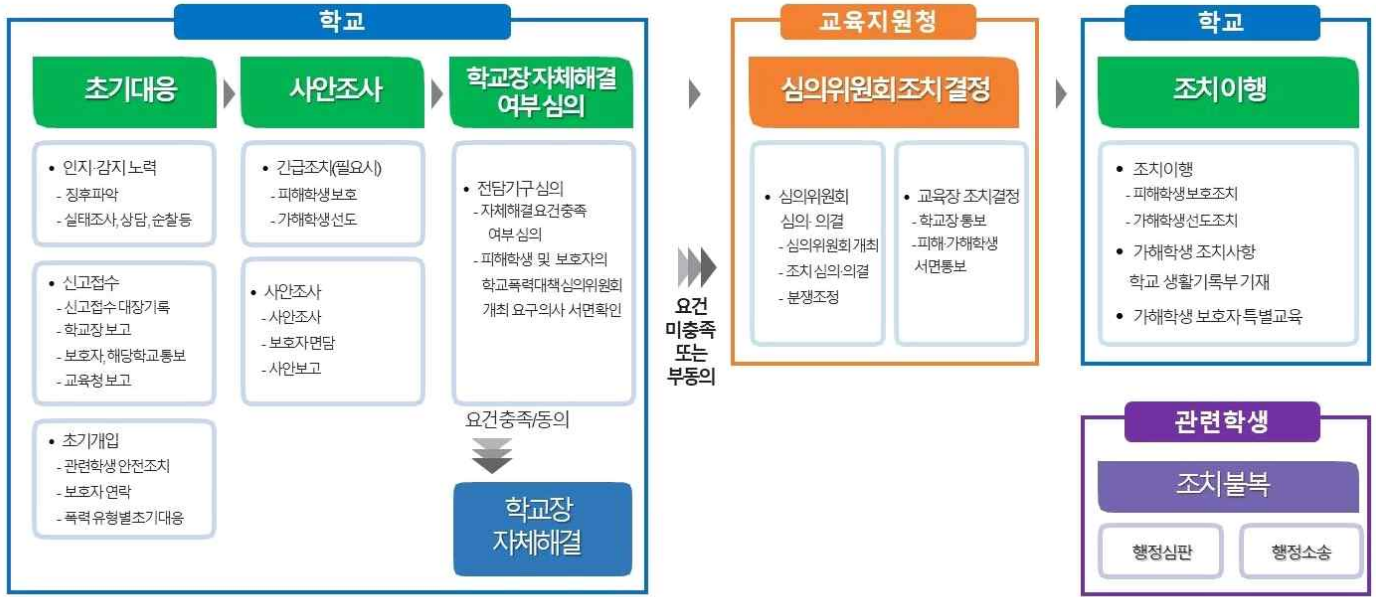
I 2020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유형	
<p>신체 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p>언어 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p>금품갈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는 하는 행위
<p>강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p>따돌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등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p>성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p>사이버 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을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2.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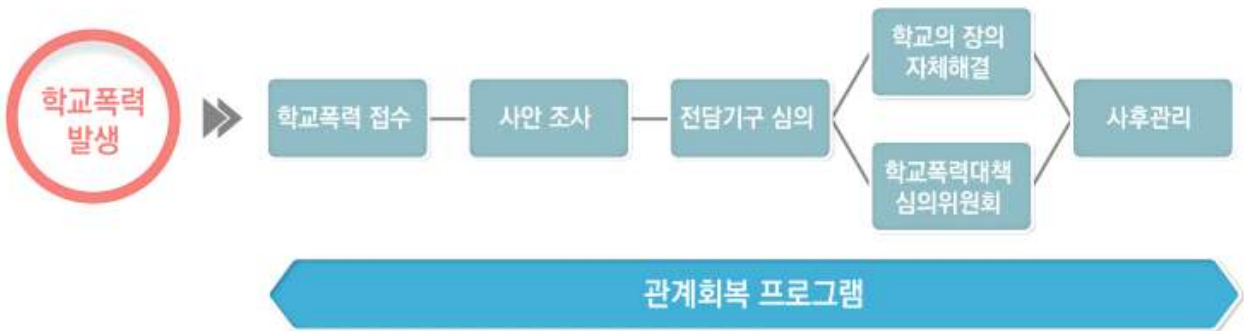


3.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4. 관계회복프로그램



-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안 후 둘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함.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학생(피해,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함.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처벌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관점에서의 전환)

5.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피해학생의 징후	가해학생의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헐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 이유없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갑자기 돈 씹씹이가 커졌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부모에게 이유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학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봉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첫 걸음 - 부모님의 역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 ▶ 자녀와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 대화**하기
- ▶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기
(감정표현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야기하기)
- ▶ **자녀가 주로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어디에 가서 노는지 알아두기**
- ▶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 ▶ 전화나 메일을 통해 자녀를 수시로 격려하기
- ▶ 항상 자녀를 존중해 주기
- ▶ 효과적인 갈등해결방법과 대인관계기술을 가르쳐주기
- ▶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사(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학생부교사 등)과 협의하여 함께 교육하기
- ▶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키기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키기
- ▶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은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 또는 경찰 등에게 알리도록 교육**
- ▶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이나 불필요한 시내 배회를 하지 않도록 교육**
- ▶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

★ 2020학년도 1학기 학부모 연수(학교폭력예방, 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 인권교육)

※ 학교폭력 관련 온라인, 전화 신고/상담 서비스/모바일 서비스

에듀넷(도란도란)	www.dorandoran.go.kr	학교별 학교폭력 익명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제공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익명, 비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 (☎1388)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비밀상담, 실시간 채팅 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182)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안전 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safe182.go.kr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상담/신고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SOS지원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sos (☎1588-9128)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제공
스마트쉼 센터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www.iapc.or.kr (☎1599-0075)	인터넷 과다사용 관련 상담 제공(게시판, 메신저 등)
스마트 정보문화 포털	www.digitalculture.or.kr/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자료 제공
117chat	모바일 앱	학교폭력 신고센터, 채팅상담 등 제공
스마트 안심드림	모바일 앱	사이버폭력 감지시스템

II 2020 학부모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필수) 및 학부모(선택)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1.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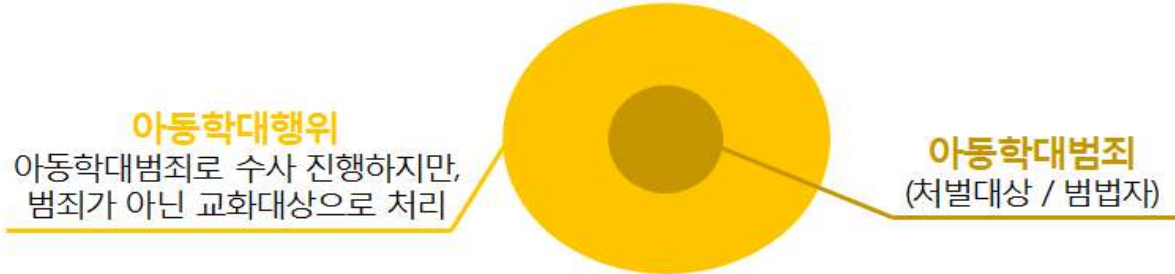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항)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항)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아동학대행위 = 처벌(범죄자) ??



➔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상담/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음.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가. 신체학대

신체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나. 정서학대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처벌법상

체포/감금(미수), 중체포/감금(미수), 특수체포/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가능함.

다. 성학대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

라. 방임·유기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처벌법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학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3.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p>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 - 3191)</p>
-------------------	--

4. 학부모의 바람직한 태도

내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과 행동보다는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하기 / 가정에서는 귀가 후 아이들의 행방을 반드시 파악 / 가족 또는 친척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가 발견되면 신고하기

Ⅲ 2020 학부모 인권교육

1. 인권이란?

1946년 유네스코(UNESCO)의 탄생 과정에서 기구의 성립 목적을 “정의,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고양시키고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각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선언에 제시된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인권 교육센터, <https://studentrights.sen.go.kr/contents/b11.jsp>

2. 학생 인권 조례

제1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침해, 행사 참여 강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 수업 강제, 휴식권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소지품 검사,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단,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 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안전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성적, 기록, 가족관계 비밀 유지,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강요를 금지 한다.
 - 동의 없이 학생 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자기 기록의 열람, 수정, 삭제 요청의 권리를 갖는다.

-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 반성문, 서약서 강요, 종교과목 수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 교지,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학생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회 활동, 학칙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의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인권 침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의 인권존중

■ 자녀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1) 아이들이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우유 잔을 엎질렀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먼저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도록 하죠.” 혹은 “컵이 엎질러졌군요. 저기 휴지가 있어요.”라고 이야기 해줄 뿐이다. 손님의 부주의를 탓하거나, 손님에게 훈계를 늘어놓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이들에게만은 이런 양해와 존중, 그리고 정중함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예절바른 사람도 아이들 앞에서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만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명령을 무시 할 때 심한 모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어린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보자.

2) 비난과 욕설, 위협과 명령을 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뿐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경고, 비교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경고, 비교 등의 말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편애한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고 겁을 먹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효과적인 것은 정확하고 짧게 문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1)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생각이나 의견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태도를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말을 걸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아주 바쁜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충분히 바쁜 상황임을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마련한다.

2)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질문과 충고를 하기 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호응하는 간단한 반응만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캐묻는 것과 장황한 충고를 받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질문과 충고를 할수록 아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 줄수록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아이는 더욱 잘 표현하게 된다.

3)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들이 즐겁거나 기쁜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은 부모가 그것 자체로 받아주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교사나 부모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괜히 울지 마라.” 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므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겠구나!”, “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났겠구나!” 등으로 공감하는 표현을 해준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안도감을 느낀다.

4)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이가 “그 녀석 죽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한다고 “정말 죽이고 싶겠구나.” 혹은 “난 동수 녀석 한 대 쥐어박고 말거야.”라고 한다고 “그래”라고 반응을 보이려는 건 아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아이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5)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계속 흐느끼는 아이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감정이 정리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함부로 나무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금지

코로나19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 혐오표현이란?

질병, 나이, 출신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선동하는 발언·몸짓 등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악의가 없거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나. 코로나19와 혐오표현

- 최근 코로나19 관련, 특정 국가·지역 출신인 학생,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을 운영하는 학부모를 둔 학생 등에 대하여 ‘코로나야, 바이러스야’라고 지칭하거나 ‘가게에 가지 마’라고 발언하는 등 해당 학생을 차별·배제하는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특정 국가·지역 출신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괴담,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